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고인 소환 시 전화방식 소환 규정 신설〉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6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현행제도	3
3. 개정안 검토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5. 2.
3. 회 부 일: 2025. 5. 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의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第73條(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u>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 여야 한다. <신 설></u>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u>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 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u>

2. 현행 제도

가. 현행 소환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73조¹⁾는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4조²⁾는 “소환장에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며,

제76조³⁾는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나. 송달 방식

1) 소환장 송달

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5조⁴⁾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
- 1)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2)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3)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부분이나 초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교부송달)으로 해야함⁵⁾.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⁶⁾이고 기타 조우송달⁷⁾, 보충 및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등이 가능함.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 규칙에서 전화·팩스·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⁸⁾함으로써, 소송실무상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을 우선하고 있음.

2)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
- 4)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5)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6) 「민사소송법」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 7)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② (생략)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8)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통지를 한 때(제76조 제5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제268조)에는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

3)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63조⁹⁾),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제64조¹⁰⁾).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9)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10)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형사소송절차에서 소환장의 송달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및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 보장 수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전화로 소환장을 대신하는 경우 소환장의 기재 사항인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74조가 소환장에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그뿐만 아니라, 전화소환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소환 내용을 인지하였는지,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 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¹¹⁾하여 전화 확인을 공시송달 전 보충적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를 전화소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현행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와 동일한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송달이 불능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는 “공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불명확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환장의 송달”은 피고인이 불출석 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로서, 절차적 적법성과 확정성이 요구되므로 전화통화로는 소환장의 송달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화 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클 것이므로, 전자적 송달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

11) 대법원 2003. 5. 6.자 2002모367 결정